

무주부동산 공고

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,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.

2013. 5. 6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 

1. 공고기간 : 2013. 5. 6. ~ 2013. 11. 5. (6개월간)
2. 신고장소 :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과 (☎ 052-241-7312)
3. 신고사항 :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(판결문, 등기권리증 등)
4. 재산의 표시

연번	재산의 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비고
1	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	491-1	임야	311	

* 위 치 :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 491번지에 접한 토지